

민흥회 회칙 및 세칙(소화 7년 1932년)

민흥회 회칙

○강령 : 친목 부조와 문맹퇴치를 목적으로 함

○규약 :

가. 본회는 민흥회리 청함

나. 본회는 본부를 동성동에 두고, 지부를 회원 10인 이상 거주하는 지방에 둠

다. 본회 회원은 다음에 열거한 종으로 조직함

- 보통회원(연령 15세 이하, 만 40세 이상)

- 특별회원(연령 40세 이하)

- 찬조회원(성년 여성 찬조원)

- 특별회원도 피선거권이 있음

라. 본 회원은 본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고, 결의에 복종하는 자로써 함

마. 본회 회원은 전 가족을 대표하고, 전 가족은 일제히 본 규약을 준수하여야 함

바. 본회의 기관은 좌와 같음

- 총회 (정기총회, 임시총회)

- 임원회

사. 본회는 정기총회를 매년 2회(구정월 포제일과 8월 15일로 정하고,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필요시에 개최함

아. 총회는 회원 3분의 1이상 출석을 요함

자. 임원회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으로써 조직함

하. 임원회에서는 필요에 응하여 임원의 증 보선을 행함

카. 본회 임원회는 좌기 별지와 같이 사무를 분담하고, 회장이 이를 대표하여 고문을 두고 참조를 후원함

하. 본회의 재정은 아래와 같음

- 입회금은 이십 전

- 유지자의 찬조금으로 함(다만 필요가 있을 시는 돈을 모을 수도 있음)

○세칙 :

가. 본회 회원은 도박을 절대 금함

나. 본회 회원 중 미성년자에 한하여 담배 음주를 절대 금함

다. 본회의 회원은 과음 및 추태를 표출하지 말아야 함, 다만 본회 회중 위급자에 한하여는 충고하되, 여러 번 범할 시에는 제명 및 절교함

라. 본동 초상 및 대소기 시에는 술과 고기, 떡 등으로 접대하는 습관을 폐지함

- 다만 어긴 자에 한해서는 위약금 10원을 징수하고 본회 회원은 조문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다만 이에 위반자에게는 위약금 이원을 징수함

- 다만 장례시에는 이 제한이 없음

마. 초상 및 대소기 시에 음식물의 분배를 절대 폐기함

- 다만 위반자에게는 위약금 10원을 징수하고, 음식물을 받는 자에게는 위약금 이원을 징수함

- 동민으로 부터 술과 고기 및 떡 등의 부조 등을 동네는 물론하고 타처에도 절대 금함

- 다만 위반자는 위약금 이원을 징수함

- 다만 유급 친족간에 한하여 토산물을 제조한 재물은 이 제한에서 두지 않음

○민흥회 임원

- 회장 1인

- 총무 1인

- 고문 약간인

- 간사 약간인

- 서무 약간인

- 재무 3인